



##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5. 10. 31.] [국토교통부령 제1531호, 2025. 10. 31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첨단물류과) 044-201-4007, 4008

### 제1장 총칙 <신설 2022. 8. 24.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1조의2 삭제 <2013. 3. 23.>

**제2조(물류단지 시설 등)** ①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2조제2항제6호에서 "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

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 · 가공시설"이란 「양곡관리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 · 보관 · 가공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단독주택 · 공동주택 · 숙박시설 · 운동시설 ·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###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<신설 2022. 8. 24.>

**제3조(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)**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###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<신설 2022. 8. 24.>

**제4조(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)**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8. 4., 2012. 2. 15., 2012. 11. 29., 2013. 3. 23.>

1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
2.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

3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
가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

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: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